

# 교단 탈퇴를 위한 단계들

## 교단 탈퇴 절차의 일곱 단계는 무엇입니까?

1. 탈퇴를 위한 분별과 숙려(explore) 요청—교회 임원회가 교단 탈퇴를 숙려하고 분별할 것을 투표하고 목회자는 감리사에게 교회가 탈퇴 절차의 시작을 희망함을 통지한다.  
기한—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2. 분별과 회중 투표—감리사회와 연회 임원회(Connectional Table)가 임명한 두 사람의 안내자(guides)는 회중과 함께 일하며 탈퇴에 관해 분별하고 숙려하는 과정을 돕는다. 두 안내자 중 적어도 한 명은 정회원 목회자이어야 하며 두 안내자 모두 탈퇴 과정에 대한 훈련을 받는다. 안내자들은 교회로부터 탈퇴 절차를 지도하는 것에 대한 수당(stipend)을 받는다. 기한—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 10일까지
3. 관계 언약 (Relationship Covenant)—교회가 투표를 통해 탈퇴를 결의하면, 안내자는 교회에게 관계 언약 절차를 안내하고 지도한다. 언약의 내용은 A)탈퇴 후에도 대뉴저지연회와 함께 할 사역과 B)탈퇴 과정 동안의 소통 방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기한: 교회의 탈퇴 투표 후 한달 이내 (2023년 3월 15일까지 완료되어야 함)
4. 실사 (Due Diligence)—교회는 모든 부동산 증서를 포함한 교단 탈퇴를 위한 자료와 문서를 수집한다. 안내자는 회중과 함께 일하며 질문에 응답하고 대뉴저지연회 재단위원회에 제출할 모든 자료를 수집한다. 기한—교회의 탈퇴 투표 후 한 달 이내 (2023년 3월 1일까지 완료되어야 함)
5. 조건동의서 (Term Sheet) 검토 및 투표—대뉴저지연회 재단이사회가 탈퇴 조건과 비용을 명시한 조건동의서를 작성하고 탈퇴를 원하는 교회의 대표 기구가 이에 투표한다.  
기한—교회의 탈퇴 투표 후 한 달 이내 (2023년 3월 15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함)
6. 연회 승인—정기 연회에서 해당 교회의 교단 탈퇴를 승인한다 기한—2023년 5월 정기 연회
7. 계약조건이행—탈퇴하는 교회가 조건동의서에 명시된 모든 지불금을 완납하고 조건을 이행한다 기한—조건 동의서의 조건들은 탈퇴 당일까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적어도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이행되어야 탈퇴를 완결할 수 있다.

목회자는 교회 임원회의 한 구성원인 것으로 압니다. 탈퇴 과정을 위한 투표가 진행될 때 목회자가 투표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해하기론 목회자는 자신을 위해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분별할 뿐, 투표엔 참여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목회자는 교회 임원회에서 투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는 교회 행정 담당자로서 대부분의 교회 위원회에 직권상(ex-officio) 일원이 됩니다. 직권상 일원으로서 목사는 교회 단체 또는 조직(body)이 내리는 결정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두가지 경우—목회위원회와 재단위원회—는 예외입니다. 목회위원회(또는 목회협조위원회)는 교회 내 인사 위원회로서 목회자 다른 유급 직원들과 함께 일합니다. 목회위원회는 목회자의 급여와 혜택을 권고하고, 목회 효율성과 건강, 그리고 복지를

상의하며, 매년 목회자를 평가합니다. 목회자는 목회위원회에 참여하지만, 투표권을 갖지 않습니다.

또한 목회자는 재단위원회에 참여하여 함께 의논하지만 재단위원으로 선출되지 않았다면 목회자에겐 투표권이 없습니다. <https://www.umc.org/en/content/ask-the-umc-who-has-voice-and-vote-in-a-local-church>

**교인 총회 (Church Conference)가 교단 탈퇴를 위한 투표 방법을 정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서면비밀투표 보다는 손을 들어 표시하는 공개 투표를 선호합니다. 교인 총회의 모든 투표는 미리 준비된 투표지에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됩니다.**

분명 탈퇴 과정에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연회가 교단 탈퇴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근거로 연회는 교회의 탈퇴 요구를 거부할 수 있나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교회가 많은 과정을 거쳐 탈퇴를 요구한다 해도 연회가 임의대로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옳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이해한 바가 사실이 아니라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에서 상세히 설명해주시오.

연회 기간 중, 탈퇴 과정을 완료하고, 탈퇴하기로 투표했으며, 또한 대뉴저지연회 재단위원회가 제시한 조건 동의서의 조건들을 받아들인 교회들의 이름이 포함된 동의안이 제출될 것입니다. 어느 다른 입법 발의와 마찬가지로, 연회는 탈퇴에 관한 동의안을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교단 탈퇴는 연회가 승인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계약 조건이 이행될 때까지 완결된 것이 아닙니다.

**교리와 장정 2548.2에 의거해 탈퇴를 진행할 수 있나요?**

사법 위원회는 교리와 장정 2548.2를 교단 탈퇴에 사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사법 위원회 판결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ResourceUMC | Judicial Council Decision Number 1449.](#)

**교회는 몇 번까지 탈퇴를 위한 투표를 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탈퇴를 위해 오직 한번만 투표할 수 있고 오직 한번만 탈퇴 과정에 임할 수 있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에게 모든 결혼식을 집행할 의무가 있습니까?**

2016년 발간된 교리와 장정 340 조 3 항 a 장로와 인허 받은 목사의 책임과 의무엔 “주례를 맡을 것인가 대한 결정은 오로지 목사의 권한이며 그의 책임이다.” 아무도 연합감리교회 목회자에게 결혼식을 집행하도록 지시할 수 없습니다.

**고백 교인(또는 교인)이란 무엇입니까?**

2016년 발간된 교리와 장정 215 조 교인의 정의는 “연합감리교회 개체교회 교인(고백 교인)은 적절한 세례 예식을 통해 믿음을 고백하여 교인이 되었거나 다른 교회에서 전입해 교인이 된 모든 세례 받은 사람들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합니다. 비고백 교인 (Non-professing members)는 교인 총회에 참석할 수는 있으나 투표권과 발언권이 없습니다.

연합감리교회는 신앙 강령(Articles of Religion)에 서술된 믿음—특히 부활과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을 버리거나 수정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수정하거나 버린 적이 없습니다. 거짓된 정보입니다. 개인이 교단의 교리에 동의하지 않으며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소문이나 기사는 있지만, 연합감리교회는 교리와 장정 신앙 강령에 나타난 믿음을 유지하며 지금 논의되는 교단 탈퇴는 인간의 성에 관한 문제에만 엄격히 국한됨을 알려드립니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다음을 보십시오. , <https://www.umc.org/en/content/articles-of-religion>, <https://www.umnews.org/en/news/bishop-urges-end-to-falsehoods-pivot-to-future>

## 분별 과정

영적인 분별이란 무엇인가요?

결정을 내리는 일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심각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교회는 종종 영적 분별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영적 분별이란 한 개인이나 공동체가 따로 시간을 구별하여 성령의 지혜와 통찰, 그리고 부르심을 주의 깊게 듣는 일입니다. 남을 심판하지 않고(마태복음 7:1-2), 하나님의 지혜와 마주하며, 서로의 이해를 도모하는 가운데 교회와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하는 일입니다.

영적 분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영적 분별을 위해선 다음 네가지 것이 필요합니다.

1. 주의 깊게 듣고 심사숙고 할 수 있는 공간
2. 우리를 영적으로 집중케 하고 단단히 다져줄 기도, 말씀, 그리고 특히 예수님의 말씀
3. 우리와 다른 사람 안에 운행하시는 성령을 향한 열린 자세
4.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존경으로 응답하며,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대화함을 인식하는 거룩한 대화

모든 교회가 탈퇴 분별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연합감리교회와 대뉴저지연회로부터 탈퇴를 고려하는 교회만 분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연회가 개체 교회의 탈퇴를 승인해야만 하나요?

개체교회가 (조건동의서 안에 명시된) 모든 지불금을 완납하고, 연회의 탈퇴 동의안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연회에서 정한 탈퇴의 시행 기일이 되는 시점에 탈퇴는 완료됩니다. 개체 교회가 연합감리교회로부터 탈퇴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회가 다수결 투표를 통해 탈퇴를 승인해야만 합니다.

<https://www.umnews.org/ko/news/what-should-united-methodist-congregations-know-about-disaffiliation> (한국어)

### 언제 연회는 개체 교회 교단 탈퇴에 대해 투표합니까?

위에 명시된 모든 절차들이 2023년 3월 31일까지 완료되었을 경우 2023년 5월에 열릴 연회에서 투표하게 됩니다. 투표를 통한 연회의 탈퇴 승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탈퇴하는 교회와 연합감리교회와 대뉴저지연회와의 관계가 공식적으로 종결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탈퇴를 위한 7단계 과정이 온전히 마무리 되고 교회가 모든 지불금을 완납하는 시점입니다. 탈퇴하는 교회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만약 연회에서 탈퇴 승인이 거부될 경우, 연회는 탈퇴를 요청한 교회에게 탈퇴 과정 중 발생한 재정적 지출을 변상하나요?

이 문제는 연회의 결정 사항이 될 것입니다.

## 연합감리교회에 남아있길 원하며 자신의 전통이 존중되길 원하는 교회들을 위한 언약과정

### 감리사가 탈퇴와 언약 과정을 인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리사들은 대뉴저지연회 교회들 중 팬데믹 상황을 넘어 미래를 향해 선교와 목회를 분별하려는 교회들과 일하게 됩니다. 제가 보내드린 두번째 편지에 미래를 향한 선교와 목회 계획이 설명되어있고 [여기](#)에서 그 내용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뉴저지연회를 향한 중차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이 차후 우리 연회의 주된 초점이 될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감리사회의 선언문을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탈퇴 분별 과정을 인도하는 안내자의 수당은 얼마입니까?

각각 안내자는 세션당 500불의 수당을 받습니다. 조건동의서 작성을 위해 문서를 접수, 검토, 확인하는 안내자들에게 또 다른 500불의 수당이 주어져야 합니다.

### 안내자들은 성소수자(LGBTQ) 목회에 관한 특정 신학이나 관점을 대변합니까?

누구에게나 자신의 신학과 관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안내자들은 자기 자신이나 자신들의 신학, 혹은 시각을 드러내지 않을 것입니다. 안내자들의 임무는 교회가 연합감리교회와 대뉴저지연회에서의 탈퇴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효과적인 안내자들은 분별과 결정의 과정을 지나며 자신의 신학이나 관점을 드러내지 않을 것입니다. 안내자들은 각 교회가 스스로의 미래를 분별하도록 도울 뿐, 자신의 생각이나 연합감리교회, 그리고 대뉴저지연회의 요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 교단 탈퇴와 관련해서 교회가 투표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교단 탈퇴에 관한 투표를 고려하는 교회는 아래 나와있는 교리와 장정 ¶2553에 내용에 따라 투표하게 됩니다.

현재 연합감리교회 내 인간의 성적 성향에 관한 문제를 둘러싼 깊은 갈등으로 인해, 개체 교회는 2019년 총회에서 결의되고 채택된 ‘동성애 관계에 있거나 스스로 동성애를 실천한다’고 밝힌 사람들의 안수를 금지하고, 결혼과 관련한 <장정>의 요건과 규정의 변경 또는 이 문제와 연관하여, 자신의 연회가 어떤 행동을 취하기로 결정하거나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양심을 이유로,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본 교단에서 탈퇴할 수 있는 제한된 권한을 가진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개체 교회가 연합감리교회에서 탈퇴하기를 결정하면, 교단을 나가는 과정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갖되,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교단 탈퇴와 관련한 절차는 모두 마쳐야 한다. ¶2553의 시효는 2023년 12월 31일에 끝나며, 이날 이후로는 이 규정을 사용할 수 없다.

연합감리교회에서 탈퇴하기로 결의하기 위해서는 교인 총회에 참석한 등록된 고백 교인 (professing member)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대뉴저지연회에 속한 교회는 이 과정을 2022년 9월 30일까지 끝내야 한다.

### 교단 탈퇴가 파송을 받아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에게 가져올 영향은 무엇입니까?

연합감리교회와 계속 함께하는 목회자가 연합감리교회로 남아있는 교회로 파송된 경우, 그 목회자는 연합감리교회 목회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며 과거와 마찬가지로 파송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목회자는 연합감리교회에 남길 원하나, 해당 목회자가 파송된 교회가 탈퇴할 경우, 그 목회자는 감리사회로부터 다른 파송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탈퇴하는 교회는 해당 목회자가 다음 파송을 받기 전까지 목회자의 사례 및 다른 베니핏(benefit)을 지불해야하는 재정적 의무를 가집니다. 목회자가 자발적 의지로 탈퇴하는 교회와 함께 연합감리교회를 떠나는 경우, 반드시 연합감리교회 목사 자격을 반납해야만 다른 교단에 가입할 수 있으며 또는 독립 교단 목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연대 언약은 무엇입니까?

만약 어느 회중이 연합감리교단과 대뉴저지 연회에서 탈퇴하기 위해 투표를 하게 된다면, 다음 단계로의 진행을 위해, 감리사회 및 연회 임원회와 일종의 언약 관계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탈퇴 후에도 진행 될 수 있는 공동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그 언약을 통해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 추후에 대중들 및 일반 교회와 나누게 될 정보, 그리고 미래의 재통합을 위한 가능성의 초안을 그리게 됩니다.

관계 언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아래의 링크에 나와 있습니다. [관계언약을 위해선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회중의 분별 과정을 돕는 두 명의 안내자들이 따르게 될 절차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중이 투표를 하기 전에 두 명의 안내자들에게 질문이나 관련 사항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어제 있었던 우리 교회의 첫 회의에서, 많은 교인들이, 목회자와 교회 임원들이 교단 탈퇴와 GMC 가입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왔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연합감리교단에 남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회를 해 줄 책임자를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대신 안내자들이 연합감리교단을 대변하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연합감리교단에 남기를 원하는 많은 교인들의 안전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정이 진행 됨에 있어, 안전하고 공정하며 평화로울 것임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는 회중에게 회람될 서신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안내자들은 회중과 함께, 교인 총회를 도와, 성령의 지혜와, 여러분과 연합감리교단의 관계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통찰을 듣기 위한 영적 분별의 과정에 동행할 것입니다. 서신은 교인 총회의 날짜들과 교인 총회를 위한 준비에 필요한 적절한 추가적인 정보를 명시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회중과 교회의 임원들에게 있어 걱정스러운 시기입니다. 안내자들은 공정하게, 편견없이 일할 것입니다. 그들은 연합감리교단을 대변하는 결정이 아닌, 성령의 지혜를 경청하며 결정을 내리게 될 교인 총회와 이 걱정의 시기에 있는 회중을 인도할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회중을 계속하여 인도함에 있어, 위해를 가하지 않고,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 조건동의서

조건동의서는 무엇인가요?

조건동의서는 대뉴저지연회 재단이사회가 작성한 문서로서, 교단 탈퇴를 위한 기본적 조건과 사항을 담은 동의서를 말합니다. 탈퇴 교회의 대표기구가 (재단이사회, 임원회, 구역회, 구역회, 혹은 교인총회) 조건동의서를 검토하고 명시된 탈퇴 동의 조건들을 수용할지 투표합니다. 투표 후 해당 교회 담임 목사와 재단이사회장이 동의서에 사인합니다.

조건들은 어떻게 결정되니까?

교리와 장정 2553 조는 연회 재단이사회가 조건들을 작성하는 것을 승인하고 있지만, 재단이사들은 교단을 탈퇴하는 교회들이 더 큰 그룹들의 의견을 검토하지 않고 다른 조건들을 검토하지 않으면, 완전히 이해 할 수 없는 광범위한 영향을 연회 전체에 끼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조건들이 작성될 때 그들은 2553 조에서 요구하는 감리사회, 연회 변호사, 베네프 담당관, 그리고 회계에게 의견 개진을 요청했습니다. 재단이사들은 연회임원회에서 의견을 받고 다른 연회의 조건들을 검토하는 추가 단계를 거쳤습니다. 재단이사들이 외부 의견을 받았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그들의 결정이었습니다. 사용된 원칙은 교단을 떠나려고 하는 교회가 2553 조에서 규정하는 비용과 그 교회의 탈퇴로 인해 연회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뉴저지연회의 조건들은 2553 조의 규정들과 대뉴저지연회에서 부과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

## 왜 연회마다 조건동의서의 조건들이 다른가요?

2022년 총회가 연기됨에 따라, 불행히도 모든 연회가 따를 수 있는 공동의 조건이 마련되지 못했고, 연회는 각자의 사정에 맞게 조건들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각 연회가 제시하는 조건들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 모든 연회를 관통하여 동일한 점은 개체 교회가 교단을 탈퇴할 때, 탈퇴를 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또 연회에 남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직접적 혹은 간접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 연회 재단위원회가 그렇게 했듯, 다른 연회의 재단위원회가 어떻게 비용을 분별하고 심사했는지 그 방법에 대해 말할 수 없습니다. 단 다른 연회들이 몇가지 비용을 간과했다거나, 다른 기금이나 예비비를 인출해 탈퇴 비용을 충당하기로 했거나, 또는 연회 분담금을 올리는 것으로 탈퇴 비용을 충당하기로 했다고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연회는 어떻게 탈퇴 비용을 충당하기로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대뉴저지연회 재단위원회는 대뉴저지연회 기금을 사용하거나 연회 분담금을 인상함으로써 탈퇴 비용을 충당하는 것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재단위원회가 가진 재정적 책무를 이행하는 것으로서 대뉴저지연회의 기금은 대뉴저지연회의 선교와 우선적 과제들에 사용되기로 이미 지정되었고 또한 대뉴저지연회에 남기로 결정한 교회들의 연회 분담금을 동결, 혹은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공평성의 문제이지, 누군가를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 두가지 예를 봅시다.

- 목회자 급여—만약 파송 받아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는 대뉴저지연회에 남기를 선택했지만 교회는 탈퇴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목회자는 계속 급여를 받아하지만, 그 혹은 그녀를 즉시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분담금을 인상하거나 대뉴저지연회 기금을 사용하는 일이 과연 공평한 일일까요? 공평성을 위해 만약 해당 목회자의 파송이 이루어진다면 사용되지 않은 기금은 교회로 반환될 것을 명기합니다.
- 과도기선교지원—대뉴저지연회 재단위원회는 모든 교회의 은행 잔고, 투자금, 기부금, 그리고 예비비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충실이 십일조와 헌금을 드림으로 만들어낸 것임을 압니다. 만약 교회 구성원의 2/3가 대뉴저지연회를 떠나기로 선택했다면, 나머지 1/3의 사람들은 계속 목회를 이어가고 또 새로운 목회를 계발하기 위한 기금이 필요로 합니다. 교회의 헌금 중 일부분을 가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계속 목회를 이어갈 수 지원하는 일이 공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이를 위해 연회 분담금을 인상하거나 대뉴저지연회 기금을 사용해야 할까요?

## 교회가 교인 총회에서 분별의 과정에 들어가는 투표를 하기 전, 조건 동의서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교리와 장정에 나와있는 탈퇴 조항은 인간의 성을 둘러싼 연합감리교회 안에 갈등의 결과입니다. 교회의 임원회는 무엇보다 먼저 이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연합감리교회를 떠나기 원한다고 믿는가?” 분별이 재정적인 논의보다

먼저 되어야 합니다. 배정된 안내자와 함께 탈퇴를 위한 첫번째 분별이 이루어지는 특별 교인 총회 때 조건동의서 가안(假案)이 제공될 것입니다.

### 조건동의서에 담긴 재정요건은 무엇인가요?

다음은 조건동의서에 포함된 재정 관련 항목들을 요약한 것입니다.

1. 탈퇴 날짜 기준으로 이전 12 개월동안 미납부된 선교분담금 (Apportionment) 및 이후 12 개월의 추가적인 선교분담금
2. 해당 연도 및 이전에 미납부된 연회 빌링(Billings)
3. 해당 연도 및 지난 2 년간 대뉴저지연회로부터 받은 지원금(Grant)
4. 대뉴저지연회의 은급혜택위원회에 의해 할당되고 웨스패스(Wespath)에 의해 확인된 미지불분 연금 부채
5. 대뉴저지연회에 의해 할당된 미지불분(미지급) 은퇴자 건강보험
6. 대뉴저지연회 재정위원회 (CFA)에 의해 할당된 BSA (Boy Scout of America) 합의금 (settlement contributions)
7. 대뉴저지연회의 용자담당부서, 재정위원회, 혹은 재단이사회에 의해 확인된 대출/용자금
8. 탈퇴하는 교회에 파송된 목회자가 연합감리교회에 남을 경우, 18 개월치 목회자 연봉 (주택보조금 포함) 및 이사 비용 (개인당 2 회의 이사비용). 2024 년 6 월 30 일까지 해당 교회 목사의 파송이 이뤄지면 미사용된 금액은 2024 년 8 월 1 일까지 탈퇴하는 교회로 상환됩니다.
9. 교회의 모든 재산과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대뉴저지연회가 부담해야 하는 법무 관련 비용
10. 교회 탈퇴와 관련된 소송비용 혹은 탈퇴와 관련하여 대뉴저지연회가 부담해야 하는 모든 법정 비용 (Court costs) 및 법무 관련 비용.
11. 과도기 선교 지원(A Missional Transitional Support): 과도기 선교 지원금은 교인 총회에서 탈퇴에 반대한 투표율에 교회의 은행잔고, 투자금, 기부금, 예비비 총액의 평균치 (지난 3 년 간을 기준으로) 를 곱하여 산출함.
12. 대뉴저지연회 감리사회(Cabinet)와 재단이사회가 탈퇴를 고려하는 교회의 분별/숙려 과정을 안내하는데 사용할 행정 비용 (\$3500). 미사용된 금액은 탈퇴 시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해당 교회로 상환될 예정.
13. 그 외 대뉴저지연회 재단이사회에 의해 확인된 기타 수수료나 비용 (교회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는 않음). 이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조건동의서는 협상/절충이 가능한가요?

조건동의서는 협상이나 절충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총회의 결의에 의해 포함된 사항들이며, 재단이사회가 감리사회와 연회 회계 및 법률고문의 자문을 거쳐 추가한 내용입니다. 탈퇴 (Disaffiliation)는 개교회가 교단을 떠날 시 건물(재산)을 가지고 떠날 수 있도록 연합감리교회의 신탁조항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제한된 옵션입니다. 연대적 교회로서 연합감리교회는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제반 선교와 사역을 위해 교회의 모든



재산과 자산을 신탁합니다. 개체 교회가 폐쇄 혹은 탈퇴를 통해 더 이상 연합감리교회가 아니게 될 경우, 교회의 모든 동산과 부동산은 연합감리교회의 선교와 사역을 위해 귀속됩니다. 일시적으로 이러한 신탁조항의 효력이 중지되기 때문에, 조건동의서에 명시된 비용들은 탈퇴하는 교회에 의해 발생될 과거, 현재, 미래의 부채를 충당하기 위해 지불되어야 합니다. 비용 관련 세부사항은 위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건동의서에 명시된 지불금을 수년에 걸쳐 지불해도 되나요?**

조건동의서 안에 명시된 지불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액 납부되어야 합니다.

**토지/건물 증서에 제한 사항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증서상의 모든 제한사항들은 탈퇴 이전에 탈퇴하는 교회에 의해 이행되어야 합니다.

과도기 선교 지원금(A Missional Transitional Support)에 대한 질문과 관련하여, “과도기 선교 지원금은 교인 총회에서 탈퇴에 반대한 투표율에 교회의 은행잔고, 투자금, 기부금, 예비비 총액의 평균치 (지난 3년 간을 기준으로) 를 곱하여 산출함.”

이는 교단 탈퇴 시 연합감리교회가 교회의 현금과 투자자산의 해당 비율을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까? 예를 들어, 교회가 \$100,000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교인의 20%가 탈퇴에 반대할 경우, 연합감리교회가 \$20,000을 취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을 의미하나요?

교회가 투표를 통해 탈퇴를 결정할 때 만장일치가 아닌 경우, 과도기 선교지원금은 대뉴저지 연회에 남기를 원하는 교인들이 새로운 예배의 처소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데 쓰여집니다. 과도기 선교지원금은 교인 총회에서 탈퇴에 반대한 투표율에 교회의 은행잔고, 투자금, 기부금, 예비비 총액의 평균치 (지난 3년 간을 기준으로) 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는 총회와 Paragraph 2553 조항에 의해 허용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 3년치 평균 총자산이 \$100,000 이고 20%의 교인이 탈퇴에 반대할 경우 탈퇴 재정요건에 \$20,000의 과도기 선교지원금이 포함됩니다.

**동펜실베니아 연회를 위한 웨비나를 보던 중 조건동의서가 필요에 따라서 수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최근 재단이사회의 회의에서 어떤 중대한 변화가 있었나요?**

조건동의서의 조건들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세부 금액들은 초기에 조건동의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알지 못했던 정보나, 시장의 변화, 재산증서안에 조건, 미지불된 연회 융자/대출금, 미지불된 선교분담금, 기타 초기 조건동의서 작성 준비시 부정확하게 계산된 항목들에 기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